## □ 법률자문 프로세스

사전협의

- 공사 각 부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률문제 발생
- 법무처 법률자문 담당자와 사전협의(필수 절차)
- 법률자문 대상 사안 여부 판단 및 관련 사실관계 명확화

. 자문의뢰

- SMART-Uffice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문의뢰
- 기존 문서를 통한 자문의뢰 방식 변경
- 해당부서 → 법무처

자문수행

- 사안별 특화된 공사 법률고문(법무법인)에 자문수행 의뢰
- 사안별 1주 ~ 2주 소요(긴급 사안 제외)
- 법무처 → 법무법인

▼ 결과확<u>인</u>

- SMART-Uffice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문결과 확인
- 인사/노무/감사/형사/기타 민감 사안 제외 모든 직원 확인 가능











